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원 추가(안 제5조제3항제1호)

-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무위원회) ① ~ ② (생략)	제5조(실무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 -----.
1.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u>국토교통부</u>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 ----- ----- ----- ----- <u>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u>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 203 - 2422